

2025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시행하는 ‘2025년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6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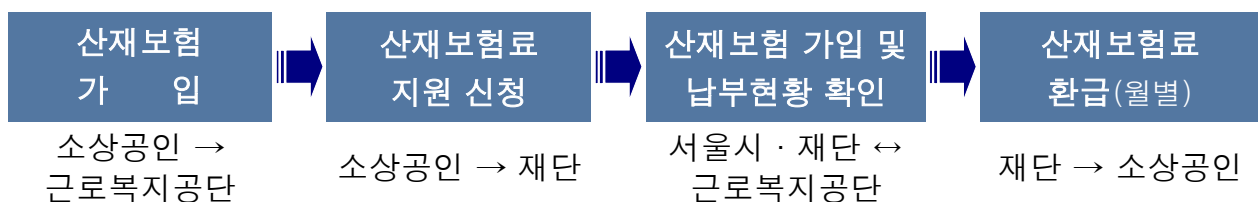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2025. 12. 31.
- ☐ 지원규모 : 275,275천원 이내
- ☐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원내용 : 월 납부 보험료의 **30~50%** 환급 지원
 - 2025년 6월 납부분부터 소급지원
 - 지원금액 예시는 (참고 2) ‘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예시’ 확인

2

지원 절차

- ☐ 지원절차 : 산재보험 납부현황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환급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 6. 16.(월) ~ 12. 31. (수)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 주소 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 지점안내 페이지에서 가까운 영업점 확인 가능

※ 사업 신청 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먼저 가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1588-0075)

□ 제출서류

구 분	서류		비고
공 통	①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생략
	②	사업자등록증	
	③	통장사본	
소상공인 확인서류 (④ 또는 ⑤)	④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근로자 없는 경우 제출X)	
	⑤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3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

- ☐ **1회 신청으로 5년간 수혜 가능하므로 매년 재신청 할 필요 없음**
 - 단,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담당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재신청하실 것
- ☐ **지원기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4

문의처

- ☐ **보험료 지원사업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 1577-6119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및 기타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참고 1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개요

□ 산재보험 비교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산재보험’과 **사업주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

	근로자 산재보험('64~)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08~)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가입의무	· 의무 가입	· 임의 가입(기준보수액 1~12등급 중 선택)
보험료	· 사업주 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	· 사업주 가 본인분 전액 부담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임의가입)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기준보수 :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 보험료를 : 업종별 상이(업종별 산재발생빈도 반영)

※ 2025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7호)

□ 산업재해 범위

- 산업재해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함

[산업재해]

- ▶ 업무상 사고 :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 ▶ 출퇴근 재해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회사차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보험 혜택

- 업무상 재해 발생시 보험급여(8가지) 내 급여신청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생활급여

【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진찰, 약제, 수술 및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해등급별 급여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 52~67% 상당) 매월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중증 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장례비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직업생활급여	장해급여를 받는 산재노동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

【 기준보수 등급별 평균임금 】

(단위 : 원)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440,633	80,240	7등급	5,392,020	177,270
2등급	2,932,530	96,410	8등급	5,883,920	193,440
3등급	3,424,430	112,580	9등급	6,375,820	209,610
4등급	3,916,320	128,750	10등급	6,867,710	225,780
5등급	4,408,220	144,920	11등급	7,359,610	241,960
6등급	4,900,120	161,100	12등급	7,851,515	258,132

* 기준보수월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7호(2024. 12. 30.)

< 기준보수 등급별 평균임금 의미 >

월 평균 보수 1등급(2,404,633원)인 사업주가 요양으로 5일간 휴업이 필요할 때

⇒ 휴업급여(280,840원) : 평균임금(80,240원)의 70%(56,168원)*5일

참고 2

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예시

< 기준보수 등급별 지원금액(예시)>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기 준 보수액	2,440,633	2,932,530	3,424,430	3,916,320	4,408,220	4,900,120	5,392,020	5,883,920	6,375,820	6,867,710	7,359,610	7,851,515
보험료 (월)	35,877	43,108	50,339	57,570	64,801	72,032	79,263	86,494	93,725	100,955	108,186	115,417
지원금 (월)	17,939	21,554	25,170	28,785	25,920	28,813	31,705	34,597	28,117	30,287	32,456	34,625
지원율	50%				40%				30%			
실부담금 (월)	17,938	21,554	25,169	28,785	38,881	43,219	47,558	51,897	65,608	70,668	75,730	80,792

※ 기준보수등급별 실 납부액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금이 확정됩니다.

* 보험요율 : '25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업종별 상이) 1.47% 적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77호, 2024.12.30.)

** 기준보수액 : 가입자가 1~12등급 중 선택(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7호 2024.12.30.)